

조합원 설명자료

선택적 복리후생 제도

2012.1.1 시행



Cafeteria Plan

복지체계 유연화로 선택과 자율성 강화

복지제도 개선사항

□ 합의 개요

- 조합원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복지체계 유연화로 선택·자율성 강화
→ 시대 Trend에 맞는 다양한 복지니즈 충족 가능
- 선택적 복리후생제도의 틀 마련을 통한 복지제도 통합 기반 및 복지제도 확장성 확보

□ 주요내용

- 선택적 복지항목 확대 : 2개 항목 → 14개 항목

현재(2)	+	추가(12)
복지포인트, 하계휴가보조비		건강검진, 의료비, 단체보험, 연금저축 상조회비, 유/초/중등교육비, 중등/고등/대학학자금, 본인학자금

- 선택적복지 구성 : 공통+필수+추가

구분		세부 구성
공통		종전 복지포인트, 하계휴가보조비 포함
필수	I	건강검진
	II	의료비, 단체보험, 연금저축, 상조회비
추가	I	유/초/중/고 교육비, 중/고/대학/본인 학자금
	II	인재육성

※ 세부 기준은 붙임 참조

- 지급방식 : 기준에 따른 복지포인트를 복지카드에 지급(1pt=1원)
 - 각 항목별 기준에 따라 복지포인트로 지급
 - ※ 중등/고등/대학학자금, 본인학자금(ktf)은 현재와 같이 현금 지급

○ 복지 포인트 지급 및 사용

- 지급주기 및 사용방법

구분		지급주기	사용방법
공통		연2회(1월 130만p, 7월 30만p)	자율
필수	I ¹	연1회	의무/일괄차감
	II ²	연1회	의무/일괄차감
추가	I	교육비 연4회, 학자금 연2회 ³	자율(교육비)
	II	연1회	자율

- ※ 1. 필수 I(건강검진)은 법정기준외는 2013년부터 옵션 선택 후 잔여포인트 자율 사용
 2. 필수II의 연금저축, 상조지원은 미가입시 포인트 미부여,
 단체보험, 실손의료보험은 2013년부터 옵션 선택 후 잔여포인트 자율 사용
 3. 추가 I(학자금)은 종전과 동일하게 수업료 실비를 현금으로 지급

- 사용기한 : 부여일로부터 3년간

※ 퇴직시는 퇴직일의 익년말까지 사용 가능

- 사용제한 : 사용가능 업종 제한으로 목적외 사용 제한

※ 조합원간 포인트 거래, 채무변제, 담보제공 불가

- 포인트 관리 : 인사시스템 - 복지포인트관리

□ 항목별 변경 내용

○ 복지포인트 : 공통항목 160만p

※ 하계휴가보조비(kt)는 폐지후 공통항목에 포함

○ 건강검진 : 연령대별 기준 변경

- 35세 미만 : 15만p
- 35세~49세 : 20만p
- 50세 이상 : 30만p
- 배우자 : 15만p

○ **의료비** : 실손의료보험으로 변경

- 부여포인트 : 연 24만p
- 지원방법 : 실손의료보험
- 연간한도 : 통원 20만원/회(연180회), 입원 1,000만원
- 보장항목 : 급여+비급여(※본인부담금 10% 부담 등)
- 지원대상 : 본인/배우자/자녀
- ※ 2013년부터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보장수준 선택가입 가능

○ **단체보험**

- 부여포인트 : 14만p
- 지원대상 : 조합원 및 배우자
- 보장수준
 - . 사망 : 1억원
 - . 교통사망 : 5,000만원(추가) * 배우자는 미적용
 - . 재해장애 : 2,500만원
 - . 암진단 : 1,500만원
- ※ 2013년부터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보장수준 선택가입 가능

○ **연금저축** : 지원대상 추가

- 추가대상 : 구ktf 전체 조합원
- 부여포인트 : 연60만p(10년간) * 미가입시 복지포인트 미부여
- ※ 구ktf 적용 기념품비를 연금저축으로 대체

○ **상조회비** : 종전 기준 유지

○ **교육비** : 종전 기준 유지

○ **학자금** : 종전 기준 유지

○ **인재육성 포인트 신설**

- 지원대상 : 입사 10년차 이내이면서 만40세 미만의 조합원
- 지원수준 : 연 30만p

[붙임]

항목별 지급기준

(단위:만p)

구분		항목	기준 Point	부여기준	지급주기
공통		기 본	160	- 전 조합원 균등	1월 : 130만p 7월 : 30만p
필수	I	건강검진	-	- 조합원 • 35세미만 : 15만원 • 35세이상~50세미만 : 20만원 • 50세이상 : 30만원 - 배우자 : 15만원(건강보험 등재)	연 1회
	II	의 료 비 단체보험 연금저축 상조회비	24 14 60 15	- 가입 조합원 限 부여 - 가입 조합원 限 부여	연 1 회 연 1 회 연 1 회 연 1 회
추가	I	교 육 비 학 자 금	-	- 종전 기준에 의해 지급 - 종전 기준에 의해 지급(현금)	연 4 회 연 2 회
	II	인재육성	30	- 입사 10년차 이내 이면서 만40세 미만인 조합원	연 1 회

복지제도 개선 매뉴얼

2011.12.

목 차

1 개요

● 정의		3
● 달라지는 점		3
● 주요변경 사항		4
● 항목별 지급기준		4
● 포인트 부여내역 확인		5
● 포인트 활용 & 예시		6

2 세부 항목별 변경사항

● 연금저축		8
● 의료비		10
● 기타		13
※ 상호부조		15
[선택적 복지 포인트 미대상]		

I 개요

1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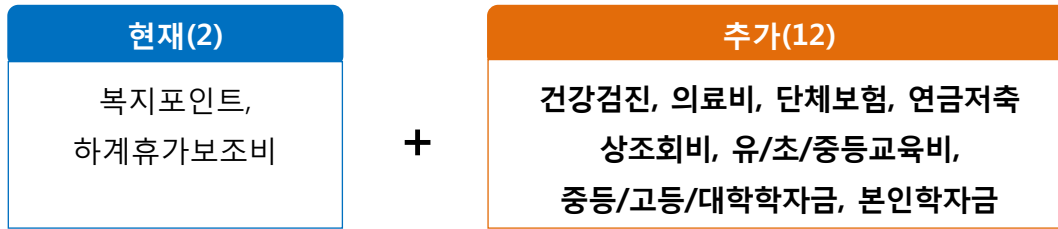
- 복지체계의 유연화를 통해 시대 Trend에 맞는 다양한 복지니즈 충족
- 이원화 된 복지제도 통합 및 개인별 복지 내역을 포인트로 이해 쉽게 계량화
- 복지제도 간소화로 직원만족도 향상 및 경영효율성 제고

2 달라지는 점

구분	종전 복지제도	개선 복지제도
기본 포인트	• 부여 포인트를 복지카드를 통해 원하는 사용처에서 사용	• 좌동
건강검진	• 연령대 별 건강검진 기준에 따라 일괄적으로 검진 실시	• 장년기 직원에게는 건강검진 수가 인상을 통해 노령화에 대비한 건강 관리 배려
의료비	• 비급여 항목 제외 또는 보장금액 제한적	• 비급여 항목 보장 • 보장금액 인상
단체보험	• 본인, 배우자 기준으로 동일 조건 일괄 가입	• '13 년부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선택 가입 가능
연금저축	• 연간 60 만원 한도로 연금저축 지원	• 지원대상 추가(지원 금액 동일) - 구)ktf 직원
교육비	• 지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녀를 가진 직원 현금 지급 - 유아, 초/중/고등, 대학 학자금	• 종전과 동일하나 포인트로 지급 * 중/고등/대학/본인 학자금은 현금 지급
상조지원	• 연간 15 만원 한도로 지원	• 좌동
인재육성	-	• 입사 10 년차 이내이면서 만 40 세 미만인 직원에게 30 만 p 지급

3 주요 변경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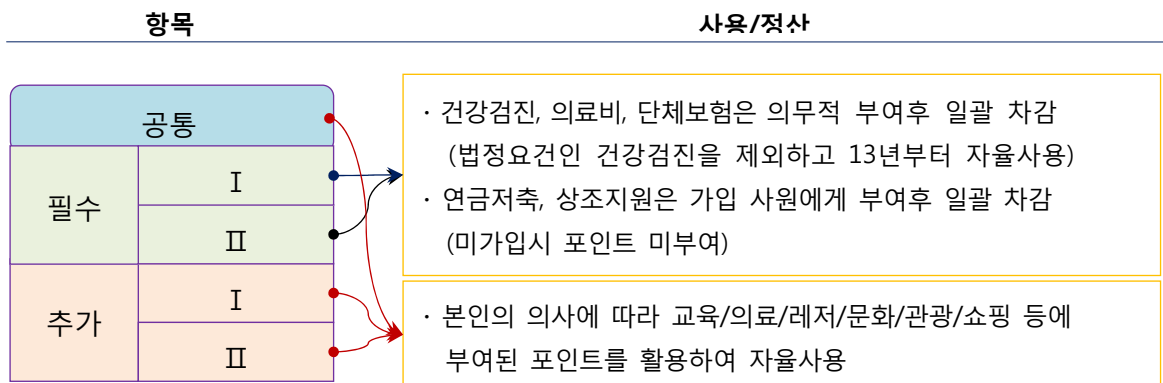
1) 선택적복지 항목 확대 운영



2) 선택적복지 포인트 부여 : 공통+필수+추가 요소에 의해 결정

- 공통 : 전사원 일률적으로 균등 배분
- 필수 : 사업주 법적 의무 항목 및 회사차원에서 Care가 필요한 항목(건강검진 등)
- 추가 : 자녀교육비 등 일정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부여

3) 복지포인트 사용/정산



4 항목별 지급기준

(단위: 만point)

구분		항목	부여 Point	부여기준
공통		기본	160	- 전사원 균등 배분
필수	I	건강검진	-	- 연령에 따라 부여기준 차등 적용 ※ 15만~45만p
	II	의료비	24	- 실손의료비/단체보험 : 재원 승/사원수 - 연금저축/상조회비 : 가입한 사원에 부여
		단체보험	14	
		연금저축	60	
		상조회비	15	

구분		항목	부여 Point	부여기준
추가	I	교육비	-	- 지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녀를 가진 사원 ※ 종전 kt, ktf 기준 유지
	II	인재육성	30	- 입사 10년차 이내이면서 만40세 미만인 사원

5 포인트 부여내역 확인

- 접근 방법 : 인사시스템(e-HR시스템)>개인업무>복지>복지후생>선택적 복지
- 세부 메뉴 안내
 - 선택적 복지 제도 안내
 - 포인트 지급기준
 - 포인트 현황

KT e-HR시스템 - Windows Internet Explorer

http://insa.kt.co.kr/human4/main_frameset_new.jsp

NAVER 내이더 검색

KT e-HR시스템

개인업무 HR업무 관리업무

Talent Market 인사정보 인사평가 역량개발 급여 복무 기금신청 **복지후생** Service지원 kt 복지관

선택적복지 업무공통 휴양시설 직장단체보험 연금저축 건강검진 우리사주 복지카드 사택 유니폼 상해보조보험

선택적복지

- 선택적복지안내
- 포인트지급기준
- 포인트현황

5 선택적 복지 안내

선택적 복지제도(Cafeteria Plan)란?

- 회사가 직원에게 제공하는 복지항목 중 개인에게 할당된 일정 예산 범위내에서 개인의 선호나 욕구에 따라 복지항목 및 수준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제도

주요내용

- 선택적 복지항목 확대 : 2개 항목 → 14개 항목**
 - 현제(2) : 복지포인트, 하계휴가보조비
 - 개선(14) : 복지포인트, 하계휴가보조비, 건강검진, 의료비, 단체보험, 연금저축, 상조회비, 유/초/중등교육비, 중등/고등/대학학자금, 본인학자금
- 선택적복지 구성 및 부여기준 : 공통+필수+추가**
 - 공통 : 160만p(전사원 일률적으로 균등 배분)
 - 필수 : 사업주 법적 의무 항목 및 회사차원에서 Care가 필요한 항목 (건강검진, 의료비, 단체보험, 연금저축, 상조회비)
 - 추가 : 일정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부여 (유/초/중 교육비, 중/고/대 학자금, 인재육성)
- 사용/정산**
 - 공통/추가 : 본인 의사에 따라 교육, 문화, 레저 등에 자율적 사용
 - 필수 : 회사에서 의무적 포인트 부여 후 일괄 차감
- 운영기준**
 - 포인트 지급 방법 : 복지카드(단, 중등/고등/대학/본인학자금은 현금지급)
 - 지급단위 : 개인별 부여기준에 의한 포인트 부여(1p=1원)
 - 포인트 사용 : 부여일로 부터 1년간(퇴직시 퇴직 다음년도 말까지)
 - 포인트 사용제한 : 사용가능업종 제한으로 목적외 사용 제한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 100%

6 포인트 활용

구분	세부내용
포인트 지급	• 지급주기 - 공통 : 연 2회(1월 130만p, 7월 30만p) - 필수 : 연 1회 - 추가 I (교육비) : 연4회(단, 대학학자금은 연2회), 추가II : 연1회 • 지급방법 : 복지카드 * 복지포인트 지급 원칙 단, 중등/고등/대학/본인 학자금은 현금지급 • 지급단위 : 개인별 부여기준에 의한 포인트 부여(1p=1원)
포인트 사용	• 기한 : 부여일로부터 3년간 * 퇴직시 퇴직일의 익년 말까지 • 제한 : 사용가능업종 제한으로 목적외 사용 제한 * 직원간 포인트 거래, 채무변제, 담보제공 불가 * '13년부터 건강검진, 단체보험, 실손의료보험 보장수준 본인 선택 후 포인트 차액 자율 사용
포인트 관리	• 인사시스템 > 복지 > 선택적복지 메뉴에서 조회

7 포인트 사용 예시

□ 만42세, 자녀2(초등 6학년, 중등 2학년) 기준

(단위 : 만p)

구분	항목	부여 포인트	항목별 Plan	차감 포인트	잔여 포인트
공통	기본	160	☒ 사용(default) 160	130	30
필수 (I)	건강검진	35	☒ 본인 선택 A형 5 ☐ 본인 선택 B형 20 ☐ 배우자 15 ※'12년에 한해 일괄기준 적용	5	30
필수 (II)	실손의료 보험	24	☒ A형(본인) 12 ☐ B형(본인+배우자+자녀) 24 ☐ C형(미가입) 0 ※'12년에 한해 일괄기준 적용	12	12
	단체보험	14	☐ A형(본인) 7 ☒ B형(본인+배우자) 14 ☐ C형(미가입) 0 ※'12년에 한해 일괄기준 적용	14	
	연금저축	60	☒ 가입 60 ☐ 미가입 0 ※미가입시 미부여	6	
	상조회비	15	☒ 가입 15 ☐ 미가입 0 ※미가입시 미부여	15	
추가 (I)	유아/초등/ 중등교육	120	☒ 당해년도 부여 120 ※인사시스템 자녀 등록기준	100	20
추가 (II)	인재육성	0	☐ 사용(default) 0		
합계		428		336	92

※ 1) 가격표는 임의로 표시한 가격임(실제 시행시 가격 변동 가능)

Ⅱ 세 부 항목별 변경사항

1

연금저축

구분	세부내용
지원 배경	구)KTF직원들에게 연금저축을 지원함으로써 세제혜택 및 노후생활 안정화 지원
지급 기준	- 지원대상 : 구)KTF직원 [2011.12.31현재 재직자] - 지원금액 : 매월 50,000원 (연금저축 가입금액이 5만원미만시 가입금액지원) - 가입상품 : 조특법 제86조의 2에 의한 세제적격연금저축 - 금융사 : 18개 금융기관 - 연간불입액의 100%전액(400만원한도)을 소득공제 받을수 있는 상품 - 지원방법:매월 급여일에 사원가입 금융기관으로 급여이체 - 회사지원금액 5만원 + 본인 추가불입금액 * 개별 가입상품 지원은 배제
신청 방법	- 구)KTF직원 대상으로만 신청메일안내 및 화면 OPEN - 상품안내: 금융사별 제안상품 설명서 링크 - 인사시스템 > 복지후생 > 연금저축신청화면 - 신청기간: 2012.1.2~ 2012.1.9 [가입대상 직원] - 청약명부작성: 2012.1.2 ~ 2012.1.9 [경영지원담당] - 청약서 작성 : 2012.1.2~2012.1.12 [해당금융기관 및 개인] - 청약서 작성시 금융사 및 계약조건 변경불가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가입시 유의사항	- 선정된 18개 이외 금융사 가입불가 - 회사 선정창구를 통하지 않는 개별적인 방문계약 지원불가 - 신청기간 이후 금융사 변경 불가
지원 중단사항	- 지원기한 종료전 퇴사자: 최종급여일까지만 지원 - 본인의 귀책사유로 연금저축이 해지된 경우 - 지원기간중 금융기관간 계약이전 등 불인정 - 금융기관 불입계좌 변경시 자동 지원중단(전산조치) * 회사 지원기한 종료후에는 금융기관간 계약이전 가능

2

의료비

1) 세부내용

구분	세부내용		
제도 설명	실손의료비보험을 통해 사원,배우자,자녀까지 비급여성 의료비를 포함하여 실질적인 의료비 지원 가능		
지원 대상	- 사원 본인, 배우자, 만20세 이하 자녀(자녀수 제한 없음) -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가족 기준으로 지원		
지원 항목	입원/통원의료비(처방조제비 포함)		
세부 지원사항	구분	입원의료비	통원의료비
	보상한도	상해/질병당 최고 1 천만원	- 외래 : 방문회당 180 회,15 만원/일 - 약제 : 처방건당 180 회,5 만원/일 * 단, 외래+처방조제 합산 20 만원이내
	자기부담금 (공제금액)	10%	- 회당 : 종합병원(2 만원), 병원(1.5 만원), 의원(1 만원), 약제비(8 천원) - 해당금액 공제후 지급
	병실차액	50% 보상 (단 1 일 10 만원 한도)	-
	일반보장	급여 및 비급여	급여 및 비급여
	특약보장 (한방, 치과)	급여 및 비급여	급여
	특약보장 (출산)	급여 및 비급여	급여 및 비급여
유의사항	※ 입원 치료비 대신 입원일당 선택 할 경우 지원사항 1일당 4만원 수준 - 지급한도 : 연간 180일 이내 - 지급제한 : 출산으로 인한 입원		
	※ 보상제외 - 해외 소재 의료기관 의료비, 피보험자의 고의, 특수 동호회 활동 사고 - 치료 목적이 아닌 외모 개선, 보신용/성장촉진 관련 비용 등 - 자동차 보험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 받는 의료비 - 타 실손 의료보험과 중복 가입시 비례 보상 -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물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정신과 질환 및 행동장애 - 직장 및 향문질환의 비급여 의료비, 인공수정, 치과의 보철 등		

2) 지원FLOW : 직장단체보험 접수처(동우기획)로 신청서류 일괄 제출

(신청사원)

(동우기획)

(보험사)

1. 보험금청구서작성 2. 증빙서류 구비 3. 메일/FAX발송	1. 미비서류 확인 2. 해당보험사 서류이관	1. 보험금 지급심사 2. 보험금 지급 3. 접수/ 지급 결과통보(사원/동우기획)
--	-----------------------------	---

※ FAX : 0502-755-1004, e-mail : ktdongwoo@paran.com, Tel : 02-755-1004

3) 신청기한 : 사유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

4)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공통제출	1. 보험금청구서 2. 개인신용정보동의서 3. 통장사본 4. 신분증사본	양식다운로드 양식다운로드
통원의료비 (처방조제포함)	1. 진료비영수증 2. 통원확인서(병명기재) 3. 초진기록지(보험사별도요구시)	
입원의료비	1. 진료비영수증 2. 진단서 3. 진료비세부내역서 4. 입퇴원확인서(병명기재)	
입원일당	1. 입퇴원확인서(병명기재)	

5) 기존 지원과 달라진 점

- 신청범위 확대 : 사원본인 입원의료비限 -> 대상가족 전체의료비대상
- 비급여성 의료비의 지원범위 확대 : MRI,CT진단료만 지원 -> 비급여성 전체 (단,한방,치과 비급여는 제외)
- 연간지원한도 확대 : 가족합산 연간 1천만원 -> (입원)질병/상해별 각 1천만원 + (통원)외래15만원/건, 처방조제5만원/건(단,연간 180회 한도)

6) 보상청구 절차

I. 진료비 영수증 보는 법

II. 진료비 영수증 보는 법 (예시)

Ⅲ. 진료비 영수증 보는 법 (사례1. 입원의료비 : 의보적용)

IV. 진료비 영수증 보는 법 (사례5. 통원의료비 : 외래진료)

V. 진료비 영수증 보는 법 (사례6. 통원의료비 : 처방조제)

약 제 비 계 산 서·영 수 증				주 약 번호
(환자보편증)				241
영수증 번호: 100520-241(10924)				
사업자등록번호	203-74-68779	상 호	심바오로약국	
사업장소재지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62-4			
조 제 일 자	환자등록번호	환 자 성 명	조제일수	심야 공휴
			7 일	☐ ☐
본인부담금①	6,700	비급여약제비③	기타전액본인부담④	
공단부담금②	15,890			
공단부담금②	15,890	수 납 금 액	5,166	
총약제비①+②+③	본인부담액①+③+④	11,800	수 납 확 인	
27,756	11,800	11,800	윤주선	
요양기관대표자 최 정 현				

Check Point

(1) 10.05.20 수납액

- 약국수납 : 11,800원

(2) 지급금액(09.10.01 이후계약)

- (의보적용)약국수납 - 8,000

=11,800-8,000

=3,800원 지급

- (의보미적용)약국수납 - 8,000 * 40%

=11,800-8,000 * 40%

=1,520원 지급

(3) 약관 지급기준

- 처방조제비는 병원과 별도공제

- 1일당 공제금액 차감 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의사 처방전 1건당 8천원 공제

VI. 기타 사례

-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 (예 자동차사고, 산재사고 또는 폭행 사고등)
- 지급기준 : 1) 입원시 -> 환자부담총액 * 40% 지급
- 2) 통원시 -> (환자부담총액 - 대학병원20,000원) * 40% 지급

7) 통원의료비 사례 예시

I. 동네 병원에 갔다가 대학병원으로 옮긴 경우

<상황> 가벼운 감기인 줄 알고 동네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으나 X레이 촬영 등 의사소견상 폐렴이 의심되니 좀 더 상급 병원으로 가서 정밀 진단을 받으라고 권고함.(진료비 2만원) 이후 종합전문요양기관인 XX대학병원으로 가서 CT촬영 등 정밀 진단을 받은 결과 폐렴으로 확인됨.(진료비 18만원)

처방전 받아 병원 옆 약국에서 3일분 약 조제받음.(1.5만원)

<보상>

- 공제금액 적용 : 둘 중 높은 공제금액 1회만 적용. 종합전문요양기관 2만원 적용.
- 보상금액 결정 : 진료내역 모두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한다는 가정하에 총진료비 20만원 중 2만원 공제하여 18만원 산출. 그러나 1일 15만원 한도이므로 최종 15만원 지급. 처방조제비 1.5만원 중 8천원 공제 후 7천원 지급받음.

병원	진료과목	수납금액	공제금액	차감금액	보상금액	비고
동네병원	내과	2 만원	상급적용	2 만원		
XX 대학병원	내과	18 만원	2 만원	16 만원	15 만원	한도
병원 옆 약국		1.5 만원	8 천원	7 천원	7 천원	

=> 최종 지급 보험금 : 157,000원 (횟수 1회 적용)

II. 동일 증상으로 여러 진료과에서 진료 받은 경우

<상황> 두통이 너무 심하여 XX대학병원 신경외과에 진찰을 받으러 갔으나,(진료비 4만원)
진료 결과 이비인후과 증상이 의심된다며 다시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음.(진료비 5만원)
처방전 받아 병원 옆 약국에서 3일분 약 조제받음 (1.2만원)

<보상>

- 공제금액 적용 : 두 진료과 진찰의 연관성이 인정된다는 가정하에 1회 적용. 종합전문요양기관 2만원 적용.
- 보상금액 결정 : 1차 진료 후 2차 진료과로 추가 진료하는 과정상의 연관성(의사소견서 등)이 증명된다는 전제하에 진료비 총액 9만원에서 공제금액 2만원을 제외한 7만원 지급. 처방조제비 1.2만원 중 8천원 공제 후 4천원 지급받음.

동일질병 & 같은날	진료	수납금액 (a)	공제금액 (b)	차감금액 (a-b)	보상금액	비고
XX대학병원	신경외과	4만원	2만원	2만원	2만원	
XX대학병원	이비인후과	5만원		5만원	5만원	
병원 옆 약국		1.2만원	8천원	4천원	4천원	

=> 최종 지급 보험금 : 74,000원 (횟수 1회 적용)

III. 다른 증상으로 하루 2번 통원을 받은 경우

<상황> 오전에 치과 치료를 받고 집에 돌아왔다가(진료비 3만원) 집에서 쉬던 중, 오후에 갑자기 장염 증상을 보여 XX대학병원 응급실에 치료를 받고 귀가함(진료비 20만원)
병원 근처 약국에서 2일분 약 조제받음(5천원)

<보상>

- 공제금액 적용 : 둘 사이 연관성이 없는 별도의 진료이므로 각각 적용.
치과 : 1만원 / XX대학병원 : 2만원
- 보상금액 결정 : 두 개의 별도의 사고로 보아 보상한도액(15만원)도 각각 적용.
따라서 치과의 경우 3만원 중 공제금액 1만원을 차감한 2만원 지급.

장염에 대한 진료비는 20만원 중 2만원 공제한 18만원이 지급되어야 하나, 1일 보상한도액이 15만원이므로 최종 15만원 지급.

처방조제의료비는 8천원 미만이므로 지급 없음.

다른질병 & 같은날	진료	수납금액 (a)	공제금액	차감금액 (a-b)	보상금액	비고
치과	치과	3만원	1만원	2만원	2만원	
XX 대학병원	장염	20만원	2만원	18만원	15만원	한도
병원 근처 약국		5천원	8천원			한도

=> 최종 지급 보험금 : 170,000원 (횟수 2회 적용)

IV. 한의원 진료를 받은 경우

<상황> 운동 중 허리를 삐끗하여 XX한방병원에서 침을 맞고 물리치료 받음(2.5만원)

이후 허리 주변 근육 및 연골재생에 좋다는 XX약물 2개월치를 복용하라는 한의사의 권고에 따라 구매함. (40만원)

<보상>

- 공제금액 적용 : 병원급이라는 전제 하에 1.5만원 적용.
- 보상금액 결정 : 침/물리치료 비용 2.5만원에서 공제금액 1.5만원 차감한 1만원 지급.

XX약물은 건강보험 비급여인 보첩비용으로서 보상에서 제외됨.

=> 최종 지급 보험금 : 10,000원

V. 치과 진료를 받은 경우

<상황> 식사 중 이물질을 씹다가 치아가 부러져 신경치료를 5회 받음.(각 7천원)

신경치료 이후 의사의 권고에 따라 파손된 치아를 보충할 재료에 대해 논의함. 아말감인 경우 3만원, 레진인 경우 12만원, 크라운(금니)인 경우 35만원 예상됨.

<보상>

- 공제금액 적용 : 의원급이라는 전제 하에 1만원 적용.
- 보상금액 결정 : 5회 모두 공제금액 이하이므로 보상에서 제외됨.

아말감인 경우 3만원에서 1만원 제외한 2만원 지급 가능.

레진, 크라운(금니)인 경우 건강보험 비급여이므로 보상에서 제외됨.

=> 최종 지급 보험금 : 아말감인 경우만 20,000원

8) 통원의료비 제한 조건

I. 공제금액

<공제조건>

의원급 : 1만원

병원급 : 1.5만원

종합전문요양기관 : 2만원

처방조제의료비 : 8천원

<공제방법>

종합전문요양기관은 해마다 공시되면 전국 약 30개 내외로 지정됨. 반드시 대학병원이라고 해서 종합전문요양기관에 포함되는 것은 아님, ex) 서울대병원(o), 서울대보라매병원(X)=> 병원급

II. 보상한도

<보상한도>

1년 180회 한도.

- 동일 질병으로 1일 2개 병원에 방문한 영수증은 횡수 1회로 적용
- 동일 질병으로 2일동안 방문한 영수증은 각각 1일 1회 즉 횡수 2회로 적용
- 다른 질병으로 1일 2개 병원 방문한 영수증은 각각의 질병으로 횡수 2회로 적용

<기간계산>

회수 한도는 동일 질병/상해에 대해서 1년 180회 한도로 제한되는 것임. (1일 1회 병원방문 가정) 보험기간이 1/1 ~ 12/31 이라는 가정하여 2월 초 골절로 4월까지 60일 통원을 하였다면, 연말까지 다른 질병 등으로 통원할 수 있는 회수가 120일 남았다는 것을 의미함.

(동일질병이라면 1일 방문한 모든 병원의 영수증은 1회로 적용됨, 1일 2회로 횡수 적용되면 일수는 180일 이내일 수 있음)

구분	세부내용
건강검진	• 부여포인트 : 35세 미만 15만P / 35세~49세 20만P / 50세 이상 30만P 부여 ※ 배우자는 15만P 부여(건강보험증에 등재된 배우자에 한함) • 사용방법 : 건강검진비로 포인트에서 일괄 차감 ※ 2013년부터 검진수준을 본인이 선택 가능 예정
단체보험	• 부여포인트 : 14만P - 보장내용 : 사망 1억원, 교통사망 추가 5,000만원 / 재해장애 2,500만원, 암진단 1,500만원 ※ 배우자는 교통사망을 제외하고 사원과 동일적용 • 사용방법 : 단체보험비로 포인트에서 일괄 차감 ※ 2013년부터 보장수준을 본인이 선택 가능 예정
교육비	• 부여포인트 : 지급 기준 기준(금액)과 동일 - 지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녀를 가진 사원만 해당 (인사시스템에 등재된 자녀 기준) • 사용방법 : 해당 지급기준 만큼 부여된 복지 포인트로 교육비 납부 - 단, 중/고/대학학자금, 본인학자금(구ktf은 기존과 같이 납입증명서 제출 후 실비 현금 지급)
인재육성	• 부여포인트 : 30만P - 지급기준 : 입사 10년차 이내이면서 만 40세 미만인 사원 • 사용방법 : 본인의 의사에 따라 교육/의료/레저문화/관광/쇼핑 등에 부여된 포인트 사용

※ 상호부조 제도 안내(선택적 복지포인트 미적용)

1)세부사항

구분	세부내용								
시행 배경	임직원간 상호부조를 통해 애경사시 동료에 대한 경제적 도움과 정서적 배려를 강화함으로써 임직원 상호간 일체감 형성								
지급 기준	- 적용일 : 2012.01.01 - 전체 임직원 (전권, 청경, 고객센터직, 재직전출자 포함) - 재직직원으로 보험료 납부일 이후부터 퇴직시점까지 사유발생직원								
상호부조비	- 월 4만원 (본인 2만원, 회사 2만원) - 본인 : 매월 급여일 공제 (최초 2011.12월, 효력발생: 2012.1.1) * 급여 무급시 : 회사에서 대납, 복귀시 대납한 기간 만큼 분납								
지원기준	- 지급액 : 지급사유당 500만원(총 2회 한하여 지급) - 지급사유: - 사망: 본인/배우자, 본인/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모든 사망 형태) - 결혼: 본인 및 자녀 (재혼 포함) - 미사유발생자 : 본인 거출금의 1.1배 환급(최대264만원) - 단, 납입기간 10년 경과자로서 10년내 수혜실적이 없는 자는 납입금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상호부조 운영위원회에서 추가조치 방안 마련 후 시행 - 지급제한: 당사자(사망/결혼)기준 중복지원 불가(형제, 자매 제외) - 상호부조금 청구소멸 시효 : 사유발생일로부터 2년								
회수기준	- 회수 : -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증빙서 미제출시 - 허위,부당청구등에 따른 책임은 본인 및 지급승인 부서장에게 있음 - 보험청구권소멸시효 : 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								
신청 및 지급절차	- 신청 (부서장) - 인사시스템 접속> 복지> 상호부조보험 메뉴에서 입력 - 발생대상자 등록 → 보험사로 자동 신청 → 지급증서 출력 및 전달 - 지급 (보험사) - 보험사는 아래 기한내 지정된 임직원 별도계좌로 입금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th>지 급 일</th></tr> </thead> <tbody> <tr> <td>결 혼</td><td>신청일로부터 2일이내(영업일 기준)</td></tr> <tr> <td>사 망</td><td>신청일로부터 2일이내(영업일 기준)</td></tr> <tr> <td>퇴 직</td><td>퇴직일 익월 5일 이내(미수혜자 한)</td></tr> </tbody> </table> - 증빙서 제출 - 해당 사원은 개인정보동의서 및 증빙서 스캔후 인사시스템에 등록 → 보험사로 증빙서류 첨부되어 메일 신청	구 분	지 급 일	결 혼	신청일로부터 2일이내(영업일 기준)	사 망	신청일로부터 2일이내(영업일 기준)	퇴 직	퇴직일 익월 5일 이내(미수혜자 한)
구 분	지 급 일								
결 혼	신청일로부터 2일이내(영업일 기준)								
사 망	신청일로부터 2일이내(영업일 기준)								
퇴 직	퇴직일 익월 5일 이내(미수혜자 한)								

2) 상호부조금 신청 증빙서류

구 분	사 유	입증서류
전분야 공통		- 개인(신용)정보 동의서(양식다운로드)
축의	본인 결혼	- 혼인관계 증명서 - 혼인신고가 지연되는 경우 • 1차 : 30일 이내(청첩장 및 결혼식 사진) • 2차 : 6개월 이내(혼인관계 증명서)
	자녀 결혼	- 직원의 가족관계 증명서 - 혼인관계 증명서 - 혼인신고가 지연되는 경우 • 1차 : 30일 이내(청첩장 및 결혼식 사진) • 2차 : 6개월 이내(혼인관계 증명서)
조의	본인 또는 배우자 사망	- 사망사실 증명서(사망 진단서, 확인서, 사망 사실이 표시된 가족관계 증명서 등) * 본인 사망의 경우 발령문서 - 가족관계 증명서(배우자 사망의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사망	- 사망사실 증명서 - 가족 확인이 가능한 가족관계 증명서 예) 배우자 부모 사망시 - 본인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자녀 사망	- 사망 사실 증명서 - 자녀 사항이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
퇴직	본인퇴직(미수혜)	- 퇴직발령문서(본사담당 일괄 신청)